

현행	개정(안)
<p>제2조(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) ① 제1조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5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6. 부속서 6(모터 달린 보드)</p> <p>7.~17. (생략)</p> <p>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 제조업자명,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6. 삭제</b></p> <p>7.~1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.</p>